



NO.2017-ETC-08

**KR**  
KOREAN REGISTER  
**TECHNICAL  
INFORMATION**

36, Myeongji ocean city 9-ro,  
Gangseo-gu, Busan, 618-814,  
The Republic of Korea  
Phone : + 82-70-8799-8333  
Fax : + 82-70-8799-8319  
E-mail : convention@krs.co.kr  
Date : 25 October 2017  
Person in charge : Jo Sung-chul

**제목 : 중국 장강삼각주 ECA 지역 모든 항구에서 저유황유 (0.5%) 사용  
규정 선 시행 (2017.9.1.~)**

중국 교통운송부에서 발표한 중국 ECA 실시 방안, 세부지침 및 장강삼각주와 선전항의 우선시행과 관련하여 지난 기술정보 [2015-ETC-12](#), [2016-ETC-1](#), [2016-ETC-2](#) 및 [2016-ETC-05](#) 를 통해 이미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중국 ECA 실시 방안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는 ECA 지역 내 모든 항구에서 0.5% 이하 황 함유량 연료유 사용이 적용 예정이나, 중국 교통운송부에서는 장강삼각주 ECA 지역에서 동 규정을 4개월 앞당겨 **2017년 9월 1일부터 선 시행** 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이 적용되는 접안기간은 접안 후 1시간 후부터 출항 1시간 전까지이며 규정 만족을 위해서는 저유황유사용, 육상 전기사용, 또는 배기가스세정장치와 같은 대체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중국 장강삼각주 ECA 지역 핵심항구들에서는 2016년 4월 1일 이후부터 접안하는 모든 선박들에 접안기간동안 0.5% 이하의 황함유량을 만족하는 연료유 사용을 규제해 왔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시행을 통해 2016년에는, 상해지역 관측소에서 2015년 대비 약 52% 황산화물 저감, 후베이성 황강시 관측소에서 2015년 대비 약 23% 황산화물 저감을 이루는 등 장강삼각주 지역에서 항구 공기질의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 졌음을 확인하였으며, 2017년 상반기 관측 결과 또한 닝보 전하이 관측소에서 2016년 대비 31% 황산화물 저감, 베이룬 관측소에서 2016년 대비 21% 황산화물이 저감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중국 교통운송부의 상기와 관련된 공지는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어)

[http://www.mot.gov.cn/jiaotongyaowen/201709/t20170904\\_2911172.html](http://www.mot.gov.cn/jiaotongyaowen/201709/t20170904_2911172.html)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저장성 및 장수성 해사청과 교통국에서는 해당 지역의 장강삼각주 ECA 지역에 속하는 모든 항구에서 2017년 9월 1일부터 접안하는 모든 선박에 0.5% 연료유 황함유량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확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중국 ECA 실시 방안의 ECA 지역의 경계와 관련하여 참고가 될 만한 구역 구분을 첨부하였으니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ECA 지역 진입 시부터 저유황유 사용 규정의 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1. 저장성 저유황유 규정
- 2. 장수성 저유황유 규정
- 3. 중국 ECA 구역 구분 (참고용) - 끝 -

정 부 대 행 검 사 본 부 장 

배부처 : 모든 검사원, 선주, 조선소, 관련 업계

Disclaimer :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

첨부 1

저장성 ECA 지역 내 모든 항구에서 저유황유 사용 규정 시행 (2017.9.1.~)

저장성 교통국 2017.8.24.

‘중국의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를 위한 법안’의 이행 및 대기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저장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보하이만 국내 배출통제구역에 관한 교통운송부 이행 계획’ 및 ‘저장성 국내 배출통제구역 이행 작업계획’에 따라 2016년 4월 1일부터 닝보-저우산 항구의 주요 항구들에서는 배출 통제가 시행되어 왔음. 선시행의 평가결과와 교통운송부의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장강삼각주 ECA 지역의 일부에 포함되는 저장 ECA 지역 모든 항구에 접안하는 선박들은 접안기간 중(접안 후 1시간부터 출항 전 1시간까지) 배출 통제(황함량 0.5% 이하 연료유 사용)를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으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음.

1. 적용 지역

중국 ECA 이행계획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장성 바다해역 및 내수지역

(1) 바다해역 : 자싱, 닝보-저우산, 타이저우를 포함하는 다음을 연결한 경계

- 1) 저장성과 상해시가 만나는 지점으로부터 12 마일 밖
- 2) 타이저우시와 윈저우시가 만나는 지점으로부터 12 마일 밖

(2) 내수지역 : 항저우, 자싱, 후저우, 사오싱, 닝보, 타이저우를 포함하는 행정관할 구역 내 운항가능 수역

2. 요건

- (1) 2017년 9월 1일부터 상기 적용지역 내 모든 항구에 접안하는 선박은 접안기간동안 황함량 0.5%를 넘지 않는 연료유를 사용하여야 함. 군함, 해군보조함 및 어선은 적용 제외.
- (2) 내수운항 선박 및 강-바다 운항 선박은 관련 규정을 만족하는 디젤유를 사용해야 함. 바다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중국이 체결한 국제 규정 및 이행계획의 요건을 만족하는 연료유를 사용해야 함.
- (3) 선박은 규정만족을 위해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대신 대체로 육상전원 사용, 청정에너지 사용, 배기가스 후처리장치 사용 등을 활용할 수 있음.

규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국 지역 해사청(MSA) 및 관련 행정부에서는 감시와 ECA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임. - 끝 -

링크 참조 : [http://www.cnzjmsa.gov.cn/ZJ/ggfw/ywdt/wfgl/201709/t20170920\\_511008.html](http://www.cnzjmsa.gov.cn/ZJ/ggfw/ywdt/wfgl/201709/t20170920_511008.html)

[The Chinese version shall prevail in case of a dispute or discrepancy of interpretation]

첨부 2

장수성 ECA 지역 내 모든 항구에서 저유황유 사용 규정 시행 (2017.9.1.~)

장수성 교통국 2017.9.4.

장수성의 친환경선박, 에너지 절약, 배출감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장수성 교통국 및 환경보호국과 해사청에서는 장강삼각주 ECA 지역의 일부에 포함되는 장수 ECA 지역 모든 항구에 접안하는 선박들은 접안기간 중(접안 후 1시간부터 출항 전 1시간까지) 배출 통제(황함량 0.5% 이하 연료유 사용)를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으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음.

1. 적용 지역

중국 ECA 이행계획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수성 바다해역 및 내수지역

(1) 바다해역

- 1) 장수성과 상해가 만나는 지점으로부터 12 마일 밖
- 2) 난통시와 옌청시가 만나는 지점으로부터 12 마일 밖

(2) 내수지역 : 난징, 전장, 양저우, 타이저우, 난통, 창저우, 우시, 쑤저우를 포함하는 행정관할구역 내 운항가능 수역

2. 요건

- (1) 2017년 9월 1일부터 상기 적용지역 내 모든 항구에 접안하는 선박은 접안기간동안 황함량 0.5%를 넘지 않는 연료유를 사용하여야 함. 군함, 해군보조함 및 어선은 적용 제외.
- (2) 연료유 시스템 변경 혹은 대체 방법의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불이행 선박의 경우 4개월 이내 수정 기간을 먼저 지정할 수 있음. 하지만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지역이던 쑤저우 및 난통 지역은 제외함.
- (3) 국제항해 및 연안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중국이 체결한 국제 규정 및 이행계획의 요건을 만족하는 연료유를 사용해야 함. 내수운항 선박 및 강-바다 운항 선박은 GB252기준을 만족하는 디젤유를 사용해야 하며 중유와 같은 잔사유 사용은 금지됨.
- (4) 선박은 규정만족을 위해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대신 대체로 육상전원 사용, 청정에너지 사용, 배기가스 후처리장치 사용 등을 활용할 수 있음.

링크 참조 : [http://www.jscd.gov.cn/art/2017/9/4/art\\_18070\\_1387059.html](http://www.jscd.gov.cn/art/2017/9/4/art_18070_1387059.html) - 끝 -

[The Chinese version shall prevail in case of a dispute or discrepancy of interpretation]

### 중국 ECA 지역의 구역 구분 (참고용)

#### 주강삼각주 ECA 지역



**바다해역** : 그림과 같이 다음 A, B, C, D, E 및 F 를 연결하는 선 안쪽 바다 (홍콩 및 마카오 해역 제외)

- A: 후이저우시와 산웨이시가 만나는 경계 지점
- B: 첸토우안으로부터 12 마일 밖
- C: 자펑 군도로부터 12 마일 밖
- D: 웨이차섬으로부터 12 마일 밖
- E: 다판시섬으로부터 12 마일 밖
- F: 장먼시와 양장시가 만나는 경계 지점

**내수지역** : 광저우, 동구안, 후이저우, 선전, 주하이, 중산, 포산, 장먼, 및 자오칭을 포함하는 행정관할 구역 내 운항가능 수역

#### 장강삼각주 ECA 지역



**바다해역** : 그림과 같이 다음 A, B, C, D, E, F, G, H, I 및 J 를 연결하는 선 안쪽 바다

- A: 난통시와 옌청시가 만나는 경계
- B: 와이케자오섬으로부터 12 마일 밖
- C: 세산섬으로부터 12 마일 밖
- D: 하이자오로부터 12 마일 밖
- E: 남동 암초지대로부터 12 마일 밖
- F: 두형제 암초지대로부터 12 마일 밖
- G: 유산 군도로부터 12 마일 밖
- H: 타이저우섬으로부터 12 마일 밖
- I: 타이저우시와 윈저우시가 만나는 지점 12 마일 밖
- J: 타이저우시와 윈저우시가 만나는 경계

**내수지역** : 난징, 전장, 양저우, 타이저우, 난퉁, 창저우, 우시, 쑤저우, 상하이, 항저우, 자싱, 후저우, 사오싱, 닝보, 저우산, 타이저우를 포함하는 행정관할구역 내 운항가능 수역

보하이만 ECA 지역



**바다해역** : 그림과 같이 단둥시과 다롄시의 경계 및 옌타이시와 웨이하이시의 경계를 연결하는 선 안쪽 바다

**내수지역** : 다롄, 잉커우, 판진, 진저우, 후루다오, 친황다오, 탕산, 텐진, 창저우, 빈저우, 둥잉, 웨이팡, 옌타이 을 포함하는 행정관할구역 내 운항가능 수역